

한화솔루션 협력사 행동규범

한화솔루션의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본 규범"이라 함)은 한화솔루션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한화솔루션과 협력사의 모든 국내외 사업장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정규직, 임시직 및 파견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가 존중받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본 규범은 한화솔루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및 서비스를 설계, 판매, 제조 또는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협력사 및 조직(이하 "협력사")에 적용됩니다. 또한 협력사는 규범을 준수함과 동시에 해당 협력사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한화솔루션은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협력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규범에 대한 협력사의 중대 위반사항이 요청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화솔루션과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국제 규범 및 기준,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한화솔루션 협력사 관리 정책 및 기준 변경 등에 따라 규범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노동 인권, 2. 안전 보건, 3. 환경, 4. 윤리 경영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규범과 현지 법규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1. 노동 인권

협력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파견 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1. 자발적 근로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제 근로자, 인신구속계약에 따른 근로자, 비자발적 죄수 근로자, 인신매매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노동력 착취 목적의 협박, 사기 등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 시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 절차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고용주가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와 그 대리인은 근로자에게 신분증,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1.2. 미성년 근로자 보호

협력사는 만 15세 미만(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 또는 자국/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보다 낮은 연령의 연소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실습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경우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법정 고용 최저 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야간, 초과근무를 비롯해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협력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학생 기록의 적절한 관리 및 교육 파트너에 대한 엄격한 실사, 학생의 권리 보호를 통해 학생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적절한 지원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1.3. 근로시간 준수

근로자의 피로는 생산성 저하, 이직률 증가, 부상 및 질병 증가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해당 국가가 법에서 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밖에 최대 근무시간 및 최대 잔업 가능 시간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법적 요건에 따라 휴식, 주중 휴무일, 휴가 신청, 유/무급 휴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4.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최저 임금, 초과 근로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해야 하며 임금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 보다 높은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의 수단으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급여 기준과 항목은 급여 내역서 또는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적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5.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언어적/정신적/신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을 포함한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에 대한 위협도 일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이행하며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1.6. 차별 및 괴롭힘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가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채용, 임금, 승진, 보상, 교육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민족/국가,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조합원 신분, 군필, 유전정보, 결혼 여부에 근거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임신여부 등)의 의료 검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7.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하고 단체교섭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는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협력사의 경영진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2. 안전 보건

협력사는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 생산 차질 최소화, 근로자 근속 유지 및 사기 증진을 위해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1. 산업 안전

협력사는 근로자들이 안전 위험(화학물질, 감전, 화재, 차량, 추락위험 등)에 잠재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식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 조치, 예방적 차원의 유지 보수, 안전한 작업 절차(잠금장치, 보호장치),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통제 및 관리해야 합니다. 상기 수단으로 위해 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해당 위험 요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임신 또는 수유기의 여성 근로자는 고위해 요소 작업 환경에 배치하지 않고 안전 위험이 있는 작업 근무를 줄이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유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2.2. 비상사태 대비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 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 보고, 근로자 통지 및 대피 절차를 마련하고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근로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대피훈련, 탈출 시설, 화재 감지 및 소화 장비 확보, 복구 계획을 포함한 비상 사태 계획과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추적할 수 있는 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보고, 산업재해 및 질병 분류 및 기록, 의료처치 제공, 사례 조사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시정조치, 휴직 및 복직 활성화 제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4. 산업 보건

협력사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바이러스 등의 생물학적 인자 및 고온, 방사선 등의 물리적 인자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하며,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생산설비 개선 등의 기술적 통제 및 관련법 준수를 통한 행정적 통제를 실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상기 기술된 방법으로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5. 신체부담 업무 관리

협력사는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체력소모가 많은 업무 등 근로자에게 과중한 육체적 부담을 주는 작업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2.6. 설비 안전관리

협력사는 생산 설비나 기타 기계장치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상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설비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 보호 장치, 안전 연동 장치, 방호벽 등을 제공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를 개정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7. 위생, 음식, 주거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시설을 제공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조명 및 비상구, 온수, 냉/난방 및 환기장치, 소지품 및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 보관함, 적절한 개인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2.8.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모든 확인된 작업장 위험요소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안전보건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3. 환경

협력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필수요 소임을 인식하고,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폐기,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통제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제조공 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공의 안전보건을 지켜야 합니다.

3.1. 환경 인허가 취득

협력사는 요구되는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예: 배출/방지시설 등)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 지, 관리하고 최신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2. 오염예방 및 자원사용 저감

협력사는 배출가스, 오염물질 배출 및 폐기물 발생을 오염원 제어 설비 설치, 공정 변경 등을 통해 최소화 또는 제거해야 합니다. 물, 화석연료, 광물, 원시림을 포함한 천연 자원 은 생산공정 변경, 대체 원료 사용, 자원 보존, 원자재 재활용과 재사용 등을 통해 사용량 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3. 유해물질 관리

협력사는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명확히 파악 하고, 해당 물질의 안전한 취급, 운송,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실시함 과 동시에 식별 표기, 라벨링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3.4. 고형 폐기물

협력사는 고형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식별, 관리해야 하고 발생량 저감 노력 및 폐기, 재활 용을 책임감 있게 실시해야 합니다.

3.5. 대기오염 관리

협력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 물질, 공정에서 발생된 연소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관 리/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 설비를 운영하고 처리효율을 상시 모니 터링해야 합니다.

3.6. 제품 내 물질 규제 준수

협력사는 제품 및 제조공정상의 금지/제한 물질, 재활용 및 폐기 라벨 표기 등과 관련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한화솔루션의 요구사항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3.7. 수자원 관리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 및 배출을 기록, 모니터링하는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물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오염 경로를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폐수를 방출 또는 폐기 전에 그 특성을 파악하여 모니터링, 관리해야 하고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폐수처리 및 억제 시스템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3.8. 에너지 및 온실가스

협력사는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을 산정하고 기록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 때, 과학 기반 온실가스 감축 목표(Science-based emission reduction target) 설정을 권고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대하는 등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Appendix 1 참조)

3.9. 생물 다양성 보존

협력사는 자연 생태계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경영 활동이 주변 지역의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4. 윤리경영

협력사의 경영활동은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1. 청렴성

협력사는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을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감시해야 합니다.

4.2. 부당이득 금지

협력사는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다른 대가를 약속/제안/제공하거나, 이의 제공을 허가하거나, 이를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기회를 획득/유지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가치를 약속/제안/제공하거나, 이의 제공을 허가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 모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부패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관련 절차를 준수 및 실행해야 합니다.

4.3. 정보 공개

협력사는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이를 협력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협력사의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무 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산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의 보관 및 폐기 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4.4. 지적재산 보호

협력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한화솔루션과 및 한화솔루션의 고객사, 공급사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4.5.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협력사는 광고 및 경쟁에 관한 규제와 공정거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6. 신원보호 및 보복금지

협력사는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사 및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및 신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7.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공급사, 고객사, 소비자,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8. 책임있는 자원 관리

협력사는 국제 사회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원산지의 광물(텅스텐, 주석, 금, 탄탈륨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화솔루션과 연관된 공급망 사슬 내에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사는 국제 규정(OECD 외)과 국가별 법규를 준수하는 정책을 수립, 운영해야 하고, 관련 물질의 원산지, 거래처 등을 포함한 모든 공급망에 대해 그 사용 여부를 추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용 물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한화솔루션의 요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Appendix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과학기반 목표 수립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1.1 온실가스 배출 범위 별 정의

온실가스 배출은 성격과 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Scope 1: 조직에서 소유하거나 가동 관리하는 자산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

(예. 공정연소시설 등의 고정 설비에서 화석 연료의 연소로부터의 배출, 내연기관 이동 수단으로부터의 배출 등)

Scope 2: 조직에서 소비하는 구매 또는 취득 전력, 증기, 냉난방으로 인해 생성되는 간접 배출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 열(스팀) 등의 소비에 의한 배출)

Scope 3: 상/하위 배출을 모두 포함하여 조직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인 배출 (Scope 2 제외)

1.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경유, 등유, LNG, LPG, 전기, 스팀 등과 같은 에너지원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산정 방법, 순발열량, 배출계수 등의 정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의 [별표 6], [별표 12]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Scope 1 배출량) = (연료 사용량) X (연료 순발열량) X (연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

(Scope 2 배출량) = (외부 조달 전력 또는 스팀 사용량) X (전력 또는 스팀 배출계수)

2. 과학기반 목표 수립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해서는 기준연도를 설정해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목표 연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방법론으로 Scope 1, 2 배출량이 연간 최소 4.2%씩 감축되도록 경로를 수립하는 SBTi(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의 절대량 감축 방법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